

[붙임 3]

확 인 서				
제공기관명		사업명		
사 업 명				
제공기관 주소				
사 업 주 관 (시도,시군구)				
점검기간 부터 까지			
<input type="checkbox"/> 확인사항(필요시 파일 또는 별도 자료 붙임.)				
○ 제목 : 제공인력 자격기준 위반				
(규정) 아동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제공인력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-55호(2012.5.29.)에서 규정한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, - 심리, 상담, 치료학(언어, 음악, 미술) 등 아동·청소년 발달 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자의 경우에는 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을 규정하고 있으나				
※ 근거 : 법 제00조 제00항, 지침 00쪽 등 기재				
(위반) 제공인력 000은 동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않고, '12년 00월~'13년00월 까지 이용자000 등 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, 정부지원금 000원을 결제하여, 위 자격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				
※ 동 기간중 제공인력 000는 00대학교 00학과 0학년 재학 중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임				
<자격기준 미 충족 제공인력 서비스 제공현황>				
이용월	제공인력	이용자	결제금액	결제일자
합계				
※ 분량이 많을 경우 별도 붙임				
[붙임] 제공기록지 사본				

